

행정명령서

1.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.

가. 처분대상 :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·업종

나. 기 간

- 전라북도 공고 제2022-693호(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)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. 4. 18.(월) 05시까지 유효
- 전라북도 공고 제2022-693호(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)에 의한 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2022. 4. 24.(일) 24시까지 유효
- 전라북도 공고 제2022-693호(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)에 의한 다중이용시설* 등 '실내 취식 금지' 조치는 2022. 4. 25.(월) 0시부터 해제
* 다중이용시설 세부현황은 붙임1 참고

다. 처분내용 :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(취식금지 등) 시행(붙임 참고)

라. 처분이유

- 정부는 확연한 감소세 진입,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해제하기로 결정

마. 법적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

바. 벌칙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제7호

사. 과태료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제2항, 제4항

아. 시설폐쇄·운영중단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3항 부터 제5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0

2.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, 제83조에 따라 1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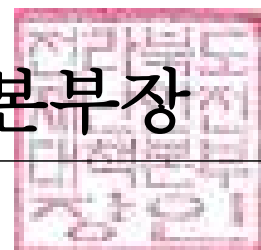
3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4. 처분 총괄담당자

이름	소속	직급	연락처
김성국	전북도청 사회재난과	지방공업사무관	063-280-3797
최 권	전북도청 사회재난과	지방행정주무관	063-280-3823

2022. 4. 15.

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



1 적용 기간

- 2022년 4월 18일(월) 0시 ~ 별도 안내 시까지

<경과규정 등>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16350(2022.4.1.)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.4.18.(월) 05시까지 유효
-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되는 '실내 취식 금지' 조치는 2022.4.25.(월) 0시부터 해제

2 적용 대상_지역/시설

- (대상_지역) 전국 17개 시·도

<수도권>

-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

<수도권 외 지역>

-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
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
- (대상_시설) 다중이용시설 등 33종

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(33종)**<취식 금지시설_18종>**

- ▲ 노래(코인)연습장 ▲ 실내체육시설 ▲ 목욕장업 ▲ 경륜·경정·경마/카지노(내국인)
- ▲ 멀티방 ▲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▲ 마사지업소·안마소 ▲ 오락실 ▲ 전시회·박람회
- ▲ 이미용업 ▲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▲ 학원 등 ▲ 독서실·스터디카페
- ▲ 영화관·공연장 ▲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 ▲ 도서관 ▲ 상점·마트·백화점 ▲ 종교시설

<취식 가능시설_13종>

- ▲ 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·무도장)
- ▲ 식당·카페 ▲ PC방 ▲ 파티룸 ▲ 결혼식장 ▲ 장례식장 ▲ 돌잔치 ▲ 유원시설
- ▲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▲ 실외체육시설 ▲ 숙박시설 ▲ 키즈카페 ▲ 국제회의·학술행사
- ▲ 콜센터 ▲ 물류센터

※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위 의무적용 시설과 자유업
기타 미등록, 무허가 시설 등 유사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계속 적용 등
강화 조치 가능

3 방역 수칙

○ (살내 취식 등) 아래 대상시설에서의 ▲살내취식 금지 및 ▲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*

- 기타 환기, 소독, 사람 간 거리두기(1m) 등 권고사항은 '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' 참고

*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

**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름

<실내 취식 관련 준수 의무사항>

★ 대상시설(18종)	
▲ 노래(코인)연습장 ▲ 실내체육시설* ▲ 목욕장업 ▲ 경마장·경륜장·경정장/카지노(내국인) ▲ 멀티방 ▲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** ▲ 마사지업소·안마소 ▲ 오락실 ▲ 이미용업 ▲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▲ 독서실·스터디카페 ▲ 영화관·공연장 ▲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 ▲ 도서관 ▲ 종교시설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	○(이용자)
-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	-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
▲ 전시회·박람회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	○(이용자)
-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	-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
<음식물 전시 등 목적인 경우>	<음식물 전시 등 목적인 경우>
- 참가업체부스 외 환기가 가능한 구역에 시음·시식 공간 마련	- 칸막이 내 시식·시음하기
- 시음·시식공간 관리자 별도 지정	- 시식·시음 후 바로 마스크 착용
- 구역 내 2m 간격으로 1인용 칸막이 설치 (좌석 미배치)	- 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
- 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 안내	- 이용 시 대화 금지 및 1분 이내 이용(강력 권고)
- 대화 금지 및 1분 이내 이용(강력권고)	
- 이용 후 즉시 소독·폐기물 수거조치	
▲ 학원 등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	○(이용자)
-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	-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
<전일제 시설에서의 식사>	<전일제 시설에서의 식사>
-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·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, 식당 등 별도의 공간에서 가능 및 안내	-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·직업훈련기관에서 식사하는 식당 등 별도의 공간에서 가능

▲ 상점·마트·백화점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	○(이용자)
- 매장 내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	- 매장 내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
- 시식·시음·견본품(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) 서비스 금지 및 안내	- 시식·시음·견본품(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) 서비스 이용 금지
<공통사항>	
■ 시설 내 식당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 등 별도공간(푸드존 등)이 있는 경우, 해당 공간 내에서만 취식 가능	
<공통사항 외>	
■ 종교시설 및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각각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 제공 금지 포함	
*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 무관	
** 고척스카이돔 포함	

4 법적 근거

- (완화 시 절차) 당해 지자체가 속한 ①권역별 지자체와의 협의와 ②중수본 사전협의 및 ③중대본 사전보고를 모두 거친 후 적용

4 법적 근거_[붙임1] 확인

5 추진내용 및 절차_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은 [붙임2] 확인

① (중대본)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준수 조치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2호의2호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)
↓
② (지자체)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 준수 여부 현장점검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↓
③ 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(감염병예방법 제83조)
↓
④ (지자체)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*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

6 준수사항 등

○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
-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

○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

-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 시 과태료 부과
→ 경고, 시설 운영 중단·폐쇄명령 등 조치
-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집합금지 등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

-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
- 해당 시설 운영 시 준수사항, 위반 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안내
-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 - 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-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
-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붙임1

법적 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호의2, 제2호의4 및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2의4.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붙임2

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에 따른 경고,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

<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일부 발췌) >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	5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,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(과태료) 제2항, 제4항에 따른 관리자·운영자·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

<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33조 별표3(일부 발췌) >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아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83조 제2항	50	100	200
자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83조 제4항제1호	10	10	
차.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83조 제4항제2호	10	10	

1 적용 기간

- 2022년 4월 18일(월) 0시 ~ 별도 안내 시까지

2 적용 대상_지역

- (대상_지역) 전국 17개 시·도

<수도권>

-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

<수도권 외 지역>

-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
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
3 방역 수칙

- (적용 해제) 사적모임 등 모임·행사에 적용된 방역지침을 해제하
되, 마스크 착용 의무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
 - 기타 환기, 소독, 사람 간 거리두기(1m) 등 권고사항은 '생활 방역
세부수칙 안내서' 참고
 - *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름
 - **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모임·행사에 대해 방역지침 계속
적용 등 강화 조치 가능

4 법적 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
제2호, 같은 조 제2호의2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
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
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
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
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1 적용 기간

- 2022년 4월 25일(월) 0시 ~ 별도 안내 시까지

2 적용 대상

- (대상) 버스·지하철·택시 등 운송수단(국제항공편 제외)

-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(노선 버스, 기차, 여객선 등)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(통근·통학버스,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, 택시 등)
- 「항공사업법」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「항공안전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(국제항공편 제외)

3 방역 수칙

- (적용 해제)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적용을 해제하되, 마스크 착용 의무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

- 기타 환기, 소독, 사람 간 거리두기(1m) 등 권고사항은 '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' 참고

*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름

4 법적 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의3호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2의3. 버스·열차·선박·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